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2019년 10월 31일(목) 10:00(현안조정회의 종료)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0. 30.(수)	담당부서	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담당과장	공 석	담 당 자	김정두 서기관 (044-203-5568)
	에너지안전과 이희원 과장 (044-203-5270)		박경민 사무관 (044-203-5275)
	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 (044-203-5390)		박성수 사무관 (044-203-5398)
	입지총괄과 조웅환 과장 (044-203-4430)		김시덕 사무관 (044-203-4409)
	전기통신제품안전과 장혁조 과장 (043-870-5440)		노학엽 연구관 (043-870-5441)

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(부처 합동)」 발표

- 산업부, 수소차 · 의료기기 분야 현장애로 5건 해소 -

□ 정부는 10월 31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**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(이낙연 총리 주재)를 개최하고, **33건**의 **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」**을 논의·확정했습니다.

○ **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**은 규제 샌드박스 등 **'先허용-後규제' 원칙**하의 **네거티브 규제방식***과 함께 신산업·신기술 관련 **현장에서 직면**하고 있는 시급한 **애로를 집중 발굴·해소**하기 위한 것으로,

* (입법방식 유연화) 포괄적 개념정의, 사전 허용-사후 평가관리 등을 통해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(규제 샌드박스)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유예·면제하는 제도

○ '18.1월 5대 신산업 전반*의 현장애로 해소를 포함하여 **핵심테마 중심으로 순차 추진**** 중에 있으며, 이번에는 **△수소차, △가상현실(VR), △의료기기**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·개선하였습니다.

* 전기·자율자동차, IOT 가전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헬스, 반도체·디스플레이
** 3차에 걸쳐('18.1월, '18.11월, '19.5월) 207건 해소 → 금번 33건 개선

1차('18.1월)	2차('18.11월)	3차('19.5월)	4차('19.10월)
5대 신산업 전반 (총괄) * 89건 해소	→ 수소차·전기차, 드론 (핵심테마 Ⅰ) * 82건 해소	→ IoT, 3D프린팅, 신약, 웰니스식품 (핵심테마 Ⅱ) * 36건 해소	→ 수소차, VR, 의료기기 (핵심테마 Ⅲ) * 33건 해소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신산업·신기술 분야**에서 기업이 **사업기회를 신속히 창출**할 수 있도록 지원 중으로, 금번 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방안」에서는 **수소차 및 의료기기 분야 5건을 포함**하였습니다.

□ 산업부 개선사례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전·후방 경제적·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**수소경제 실현**과 관련, **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**을 위하여 **관련 시설·입지 제한 규제를 합리화**하였습니다.

- **(수소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)** 최근 등장한 **복합형태의 수소충전소(마더스테이션)*** 시설 관련, 현재 기존 설비간 이격거리를 제한(5m)하고 있으나,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임을 감안하여 **시설간 이격거리를 완화**하였습니다.


<출처:창원시>

* (기존 충전소) 다른 사업소에서 수소를 공급 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저장식 수소충전소, 수소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로 분류
(마더 스테이션 충전소) ①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자동차에 충전하고, ②충전 후 남은 수소를 저장용기에 충전하여 다른 저장식 충전소에 공급

- **(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)** 현재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, **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**하도록 하여 **제한된 입지를 합리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
<출처: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>

*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구체화 예정(~'20.4월)

- **(개발제한 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범위 확대)** 개발제한 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 이외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였으나, **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**하여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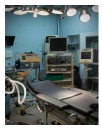

<출처:창원시>

- **(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허용)** 현재 산업단지 內 지원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, 입주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**'제조'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**의 경우 **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를 허용**할 예정입니다.


<출처:창원시>

○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의료기기 시장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**의료기기에 대한 중복된 인증을 면제**하는 등 **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**하였습니다.

- **(의료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 확대)** 현행 「의료기기법」 상 '인증'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, **중복인증 방지** 차원에서 **「의료기기법」 상 '허가' 제품과 동일하게 '인증'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할** 예정입니다.


<출처: 게티이미지뱅크>

□ 금번 개선사례의 경우 **법령 개정 없이 해결 가능한 과제**는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**단기간 내 애로를 해소**하였으며, 법령 개정 등 **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**들도 **신속히 추진**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○ 또한,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**신제품·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히 출시**되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**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**을 **지속적으로 추진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OPEN 공정보다 ·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정두 사무관(☎ 010-4596-3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산업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과제 주요 내용(5건)**

분야	주요내용	완료시한
수소차	① **최근 등장한 수소충전소(마더스테이션)에 대한 안전기준 합리화**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권해석) 애로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·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(일명 마더스테이션) 등장 → 기존시설*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,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(5m 이상)하고 있어 추가 부지 마련 등 애로 발생 * 수소제조시설, 제조식수소충전소, 저장식수소충전소 개선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(마더스테이션)를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 완화	기완료 ('19.7.29.)
	② **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**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행정조치) 애로 수소충전소 주요 설비는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* → 제한된 입지 활용을 위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곤란 * 부가 설비는 규정상 지상 설치 여부가 명확치 않아 복층형 사실상 불가 개선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하여 구축비용 절감 *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 시설 범위는 구체화 예정	'20.4월
	③ **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(자체 제조·충전) 설치 허용** (친환경자동차법, 개발제한구역법 유권해석) 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설치가 가능하나,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여 혼선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'수소연료공급시설'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허용	기완료 ('19.8.8.)
	④ **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**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) 애로 수소충전소는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상 지원시설로 분류*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곤란 * 지원시설구역 내 여유 부지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 발생 개선 '제조' 기능이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산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	'19.11월
의료기기	⑤ **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** 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 애로 「의료기기법」상 '허가' 받은 제품과 달리 '인증'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인증 발생 * 의료기기 등급별 인허가 체계 : 1등급(신고), 2등급(인증), 3,4등급(허가) 개선 '허가' 제품과 동일하게 '인증'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	'20.6월